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400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상정	소위 심사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87	김석기의원 등 11인	'25.3.24.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6.2.24.)
	2211364	조계원의원 등 14인	'25.7.9.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6.2.24.)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2. 2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명시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 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함(안 제16조).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을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으로,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그 밖에 전략회의”로 한다.

- 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u>관광진흥계획의 수립</u>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u> 소속으로 <u>국가관광전략회의</u>를 둔다.</p> <p><신 설></p> <p><신 설></p> <p>② <u>국가관광전략회의</u>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 ----- -----<u>관광진흥계획</u> <u>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u> <u>반영</u>-----<u>대통령</u> -----<u>국가관광전략회의</u> <u>(이하 “전략회의”라 한다)</u>----- --.</p> <p>② <u>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u> <u>이 된다.</u></p> <p>③ <u>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u> <u>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u> <u>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u> <u>다.</u></p> <p>④ <u>그 밖에 전략회의</u>----- ----- -----.</p>